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3 선고 2020가단75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변론 종결 2020. 6. 25

판결 선고 2020. 7. 23

주 문

1. 원고에게,가. 피고 C 주식회사,D은 연대하여 50,246,575원 및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,나. 피고 E은 피고 C 주식회사,D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25,123,287원 및그 중 25,000,000원에 대하여각 2019 . 7. 12.부터 2020 . 3. 8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. 5. 26.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, F 주식회사가 생산·판 매하는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E은 위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8. 5.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, 피고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,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, 보험가입금액을 50,000,000, 보험기간을 2018. 5. 10.부터 2019. 5. 9.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 약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한편,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.

라. 그 후 피고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했고, 원고는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9.6. 11. F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5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 지는 연 6%이고, 그 다음날부터는 연 9%이다.

【인정근거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, D 사이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) 원고와 피고 E 사이 :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 C 주식회사■,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 50,000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,피고 C 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 인인 피고 D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 246, 575원(=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0,000,000원 +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. 6. 12.부터 2019. 7. 11.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246,575원) 및 그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7.1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. 3. 8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공동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(민법 제448조 제1항,제444조 제1항).

또한 공동보증인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.

살피건대,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 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,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, 기능 등 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,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,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 이다.

따라서 보증보험회사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 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, 그들 중 어느 일방 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 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5다37154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자인 원고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은 F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, 자기 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원고는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E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,피고 E은

원고에게 원고가 그 부담부분(1/2)을 초과 하여 변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결국 피고 E은 피고 C 주식회사,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,위 가.항 기재와 같이 피 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 중 25,123,287원[=(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0,000,000원 +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. 6. 12.부터 2019. 7.11. 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46,575원) x1/2, 원 미만 버림] 및 그 중 원고가 보험금으 로지급한 돈의 1/2에 해당하는 25,000,000원(=50,000,000원 X 1/2)에 대하여 2019. 7.1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. 3. 8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장동민